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110688 판결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2109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110688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최종민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변론종결 2021. 11. 16.

판결선고 2021. 12. 14.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19. 12. 25.까지 연

- 1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5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1. 23. 접수 제3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 주는 소위 P2P(Peer-to-Peer Lending)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체)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는 D과 연계하여 P2P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F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위 펀드는 E가 홈쇼핑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납품업체에 판매상품을 담보로 상품구매자금을 대출하여 대출채권을 취득하면, 원고는 E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그 대출원리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다. E는 2019. 6. 25. G와 사이에 12억 원을 변제기 2019. 12. 25., 이자율 연 11.3%, 연체이자율 연 13.56%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G가 E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대출채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같은 날 E, G 등과 위 펀드와 관련하여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 등을 양수하고, G는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상 양수인은 원고와 H이나 H은 펀드의 신탁업자에 불과하므로 양수인으로 원고만 표시한다, 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대상자산의 양도)

① E는 이 계약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양도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대상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제6조(대상자산 양도의 승낙)

G는 이 계약에 의하여 대상자산 일체가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을 승낙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서면에 의한 승낙의 의사에 갈음하기로 한다.

바.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E가 지정한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채권양수대금 12억 원을 입금하였다. E는 같은 날 G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억 원을 이체하였고, 위 돈은 같은 날 K의 계좌로 바로 송금되었다.

사. 한편 피고 B는 2020. 1. 23. 자녀인 피고 C에게 2019. 1. 1.기준 공시가격이 184,000,000원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피고 B는 2020. 1. 23. 다른 자녀인 L에게 2017. 5.경 매매가액이 8,300만 원이었던 익산시 M아파트 N호를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피고 B가 피고 C과 L에게 위와 같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피고 B에게는 위 각 증여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대출채무와 3,230만 원의 신용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3 내지 18호증,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양수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주채무자인 G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대출원금 12억 원의 일부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2019. 6. 25.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피고 B가 2020. 1. 23. 자녀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행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손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3.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 1) D과 E의 임직원인 O, P 등은 원고가 지급한 대출금을 G에 지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존 부실채권을 돌려막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원고가 지급한 채권양수대금 12억 원을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G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두었던 G 명의의 계좌, 법인인감도장,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돈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결국 G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이 성립하지 못하였다.
- 2)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3조 제2항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5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된 것을 조건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양도대금은 12억 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는 ‘양수인의 제3조에 의한 양도대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호 대출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고 그에 따라 양도인이 대출하여야 하는 대출금이 모두 인출되었을 것, 제4호 대출계약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따르면, E와 G 사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고 그에 따라 E가 대출금 12억 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인출하여 G에 지급하였음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 동시에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E가 G에 대출금 12억 원을 지급하기도 전에, 즉 위 선행조건이 성취되기도 전에 원고가 양도대금 12억 원을 E에 먼저 지급하였고, 심지어 E는 형식적으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G의 J은행 계좌에 형식적으로 대출금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이를 다시 다른 차주법인인 K에 인출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제5조에 따른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대금이 지급되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계약의 위법, 무효, 취소 및 해제 등의 사유가 되는 의사표시의 하자나 법률상의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 혹은 사실상 일체의 위반, 하자, 장애, 불능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D측의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었는바, 정지조건이 불성취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무효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실질은 민법상 소비대차라고 할 것인데,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고,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직후 E에게 채권양수대금 12억 원을

지급하고, E는 같은 날 12억 원을 G 명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E가 G로부터 받아 두었던 법인인감도장 등으로 위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대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양수도계약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 제3호는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대상자산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및 대상자산의 양도시에 대출과 관련한 모든 관련 계약서가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며 이들 각 계약의 위법, 무효, 취소 및 해제 등의 사유가 되는 의사표시의 하자나 법률상의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 혹은 사실상으로 일체의 위반, 하자, 장애, 불능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진실, 정확하고, 그 이후 그 기재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3조 제2항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5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된 것을 조건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양도대금은 12억 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는 ‘양수인의 제3조에 의한 양도대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호 대출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고 그에 따라 양도인이 대출하여야 하는 대출금이 모두 인출되었을 것, 제4호 대출계약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계약의 위법, 무효, 취소 및 해제 등의 사유가 되는 의사표시의 하자나 법률상의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 혹은 사실상 일체의 위반, 하자, 장애, 불능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대출하여야 하는 대출금이 모두 먼저 인출되어야 하고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계약 제2조의 내용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대상인 자산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 대한 규정이고, 제3조의 내용들은 원고가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양수인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에 대한 규정으로서, 양수인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인 E가 위 조건들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E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조항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인 피고 B가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고 있는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간 말일 다음날인 2019. 11. 26.부터 변제기인 2019. 12. 25.까지 약정이율인 연 1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5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1. 23. 접수 제3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손해정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익산시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285.9501㎡

2층 643.5766㎡

3층 643.5766㎡

4층 643.5766㎡

5층 643.5766㎡

6층 643.5766㎡

7층 643.5766㎡

8층 643.5766㎡

9층 643.5766㎡

10층 643.5766㎡

11층 643.5766㎡

12층 643.5766㎡

13층 643.5766㎡

14층 643.5766㎡

15층 643.5766㎡

16층 643.5766㎡

17층 643.5766㎡

18층 643.5766㎡

19층 548.6263㎡

20층 548.6263㎡

21층 548.626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천라북도 익산시 대 29,974㎡

(전유부분의 건물외 표시)

제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84.958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9974분의 39.76

